

## 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 호                    |
| 의결년월일 | 2005. 7. .<br>(제 17 회) |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제출일자  | 2005. 6. . |
| 제 출 자 | 계 룡 시 장    |

### 1. 개정이유

- 2005. 4. 19자 조직개편에 따라 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(2004. 12. 20, 조례 제129호)를 市의 조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중 간사지정(안 제3조제3항)
  -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 개정코자 함.

### 3. 참고자료

- 신·구조문대비표
- 관계법령
  -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

계룡시조례 제 호

## 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계룡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건설과장”을 “재난안전관리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정  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~②(생략)<br>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<br>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<u>건설과장</u> 이<br>된다. | 제3조 (위원회의 구성) ①~②(현행과<br>같음)<br>③-----<br>-----, ----- <u>재난안전</u><br><u>관리과장</u> 이 된다. |

## 관 련 법 령(발 취)

### □ 계룡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

제3조 (실·과의 설치) 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총무과, 시민봉사과, 복지문화과, 환경녹지과, 농업경제과, 건설과, 도시주택과, 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

②실·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

#### 9. 재난안전관리과장

- 가. 자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
- 나. 재난지원복구에 관한사항
- 다. 비상대책업무 및 민방위
- 라.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원
- 마. 물자자재의 비축 및 방재시설관리
- 바. 소방관련업무 및 의용소방대 지원
- 사. 재해구호 및 이재민대책
- 아. 공익근무요원 관리
- 자. 기타 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